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

합정지문 모음

“ 2002 년 ~ 2023 년 ”

김영남 변리사

합격자가 '너' 였으면 좋겠어

DreamPlus 변리사 -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

머리말

본 자료는 디자인보호법 1차 진도별 기출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즉 시험장에서 헛갈릴 만한 지문들로,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하는 지문들만 선별한 것입니다. 지문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별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를 활용하시어, 공부 효율을 높이기 바랍니다.

기타 공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강의와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드림.

합격자가 '너' 였으면 좋겠어

DreamPlus 변리사 -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

노력을 배신하는 결과는 없다.

문제	기출지문	O/X
27	<p>①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p> <p>[해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란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대법원 93후1247).</p>	X
32	<p>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p> <p>[해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92후490).</p>	X
33	<p>④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p> <p>[해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뿐만</p>	X

	<u>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u>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후129).	
35	<p>③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p> <p>[해설]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여기서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는 물품 상호간에 혼동을 말하는 것이지, 출처에 대한 혼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p>	O
38	<p>④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이 시중에 판매되어 공지된 경우 그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표현된 도자기는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해설] 전사지와 도자기는 비유사한 물품으로서 전사지가 공지되었다고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표현된 도자기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p>	X
44	<p>②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p> <p>[해설]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p>	O
44	<p>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p> <p>[해설] 등록된 디자인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하 독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p>	X

	2005후2922).	
45	<p>⑤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p> <p>[해설]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구성된 디자인이라도 그 창작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면 그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 모양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특허법원 2015허 8370).</p>	X
66	<p>③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p> <p>[해설] 심사기준</p>	O
66	<p>④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출원 이후에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의 신규성 규정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p> <p>[해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에 기본디자인 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신규성에 의해 거절되지 않는다.</p>	O
68	<p>①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된다.</p> <p>[해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에 기본디자인 출원일 이후 기본디자인</p>	X

	과 동일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제33조 제1항 각호에 의해 거절되지 않는다.	
70	<p>①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초콜릿』이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은박지로 포장한 초콜릿을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에 적합하다.</p> <p>[해설] 은박지와 초콜릿은 각각 별개 물품으로 하나의 도면에 나타낸 경우 1디자인1출원주의 위반에 해당한다.</p>	X
71	<p>④ 다용도물품은 접시가 재떨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관상 하나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날 뿐 타방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1물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p> <p>[해설] <u>다용도물품은 하나의 물품의 다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u> (ex). 맥가이버 칼) 그런데 접시를 재떨이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다용도물품이라 보기 어렵고, 다용도물품 자체가 거래통념상 1거래 가능하면 1디자인으로 취급 가능하다.</p>	X
85	<p>①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각 물품의 형상 및 모양이 모두 동일되어 있지 아니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해설]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은 구성물품 간 형태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형상 또는 모양에 통일성이 있으면 되지 반드시 두 요소 모두 동일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p>	X
85	<p>⑤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가운데 일부를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p> <p>[해설] 한 벌 물품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은 그 한 벌 전체로서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일부 구성물품의 실시하는 한 벌 물품디자인의 직접침해가 아니고, 간접침해가 되기 어려우므로 침해금지 청구할 수 없다.</p>	O
86	<p>① 한 벌의 깍연용구 세트를 구성하는 라이터, 담배함 및 재떨이의 디자인에 채색된 색채만</p>	X

	<p><u>이 무모양 일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u>, 그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된다.</p> <p>[해설] 한 벌 물품 디자인의 <u>구성물품의 색채 만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u></p>	
87	<p>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하면 되고,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u>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된다.</u></p> <p>[해설]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u>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마다 1조씩의 도면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u></p>	X
95	<p>②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u>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u>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p> <p>[해설] 창작자란 기재사항을 변경하더라도 디자인 <u>실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요지변경이 아니다.</u></p>	O
95	<p>④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출원인은 그 <u>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재보정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u></p> <p>[해설] 보정은 등록여부결정등본 통지서 발송되기 전까지 가능한바, <u>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보정각하결정 심판청구기간 경과하기 전까지 심사관의 등록여부결정이 금지되므로 여전히 보정가능시기에 해당한다.</u></p>	X
97	<p>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u>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u></p> <p>[해설]</p>	O

	<u>'거절결정'통지서 발송 후에는 재심사청구기간 등 보정가능 시기가 있다(제48조 제4항).</u>	
100	<p>①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p> <p>[해설]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가 아니라 '발송'되기 전까지 보정가능하다 (제40조 제4항 제1호).</p>	X
102	<p>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p> <p>[해설] 분할출원 시기는 보정시기와 동일하므로 거절결정통지서 발송이후에도 분할출원 가능하다 (제50조 제3항, 제48조 제4항).</p>	X
116	<p>④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해설] 특허청장은 침해경고 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제43조 제4항). 다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p>	X
118	<p>④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한다.</p> <p>[해설] 디자인의 실질적 사항으로 비밀기간 경과 후에 공보에 게재되는 정보 : 도면 또는 사진,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물품류 및 물품명칭</p>	X
119	<p>④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p> <p>[해설] 비밀디자인의 경우 비밀기간이 경과된 후 침해가 개시되었다면 그 침해행위에 과실추정되지</p>	X

	만(제116조 제1항 본문), 보기의 경우 <u>비밀기간 중 침해 개시된 것으로 과실추정되지 않는다.</u>	
123	<p>③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u>침해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u> 열람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p> <p>[해설] 제43조 제4항 - 침해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니라 <u>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여야 한다.</u></p>	X
125	<p>① 디자인권자 갑의 등록디자인 A와 을의 등록디자인 B가 <u>동일자</u>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 A 및 디자인 B에 모두 유사한 디자인 C에 대하여 갑 및 을은 서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p> <p>[해설] <u>제95조 이용저촉관계는 권리 간 출원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u> 출원일이 같은 경우 서로 허락 없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p>	O
125	<p>② 디자인권자 갑은 <u>독창적으로 창작한 자기의 등록디자인</u>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저작권이 발생한 을의 저작물과 동일한 형상인 때에는 을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p> <p>[해설] 디자인권자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디자인의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창작된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한 형상이라하더라도 <u>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u> 타인의 허락없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p>	X
125	<p>③ 디자인권자 갑은 그 디자인권의 <u>등록디자인</u>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을의 디자인권과 저촉하는 경우로서 을이 실시허락을 하지 않는 때에는 을에 대해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3조)을 청구할 수 있다.</p> <p>[해설] 갑의 '등록디자인'이 선출원된 을의 디자인권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95조 제2항의 저촉관계가 아니라 <u>무효사유에 해당한다.</u> 따라서 을에게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할 수 없다.</p>	X
126	<p>① <u>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보호범위</u>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p>	X

	<p>[해설]</p> <p>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제93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제92조). 즉 등록디자인(유사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제93조에 따라 정하고, 디자인권자는 제92조에 따라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p>	
128	<p>②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p> <p>[해설] 법정실시권자 중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p>	X
130	<p>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p> <p>[해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96조 제2항).</p>	O
135	<p>① 디자인보호법 제95조의 규율을 받는 등록디자인의 이용관계 및 저촉관계는 선출원 디자인 인권은 물론 선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및 선발생 저작권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p> <p>[해설] 후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선출원 디자인권과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후출원 등록디자인은 선출원 디자인권과 저촉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중첩시 후출원 디자인에 저촉이 아니라 무효사유로 인정될 것이다.</p>	X
136	<p>④ 디자인권자인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p> <p>[해설] 甲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더라도 甲의 등록디자인 자체의 실시는 乙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p>	X

<p>166</p>	<p>④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p> <p>여기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p> <p>[해설] 침해행위 외의 사유란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 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 우수성 등 디자인권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05다36830).</p>	<p>X</p>
<p>59회 34번</p>	<p>⑤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p> <p>[해설]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에 구성물품으로 보호장구는 포함되지 않는다.</p>	<p>X</p>



'쉬운' 디자인 제작 플랫폼, 광고보드

www.mangoboard.net

DreamPlus 변리사 –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